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 - 130호

202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지정해제 / 지원사업 공고

제조기반 산업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지정해제 /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산업통상부 장관

I.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1. 개요

○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제조산업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뿌리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별첨 1)

2. 지정요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함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다.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 · 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②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④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 1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거나 집적 예정인 지역
(단, 신청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3. 신청방법

○ **(신청주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

○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지원사업* → 특화단지 → 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작성 · 제출

○ **(신청기간) 2026. 2. 13(금) ~ 3. 16(월) 18:00**

○ **(작성서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별첨 2)

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및 관련 서류 (별첨 3)

4. 진행일정

○ 지정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3.16) → 평가(3~4월)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5월) → 특화단지 지정 고시(6월)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 서류심사 : 뿌리기업 비중 확인 및 증빙서류 검토
- 발표평가 : 서류심사 통과 단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진행
- 현장실사 :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

○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단지역량	- 기반시설 구축 현황 (10) - 단지의 성장 가능성 (10)	20
추진방향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15) - 집적화·협동화 현황 및 필요성 (10) - 집적화·협동화의 추진방향의 타당성 (10) - 추진계획의 성공가능성 (5)	40
추진전략	-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지자체의 지원 의지 및 이행 가능성 (15)	20
기대효과	-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5) - 지역산업의 발전 (15)	20
합계		100

※ 우대사항 : 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②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이 신청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특화단지 지정 평가 시 가점부여(5점)

○ **(심의·선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보단지 선정 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6. 관련규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7. 기타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02-2183-1622)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II.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제

1. 개요

○ 지정·운영 중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해제 절차 추진

2. 지정 해제 검토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지정 해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목적에 따른 지원사업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③ 특화단지 운영·관리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관련 법령 또는 지정·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단지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주체)** 특화단지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

○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지원사업* → 특화단지 → 지정 해제 신청'에서 온라인 작성·제출

○ **(신청기간) 2026. 2. 13(금) ~ 3. 16(월) 18:00**

○ **(작성서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 요청서 (별첨 4)

②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 사유서 (별첨 5)

4. 진행일정

○ 지정 해제 공고 및 접수(~3.16) → 변경(해제) 평가위원회(3~4월) → 뿌리산업 발전위원회 심의(5월) → 특화단지 지정 해제 고시(6월)

5. 평가방법

○ **(평가방법)** 변경(해제) 심의

- 평가위원회 :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 요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 현장점검(필요시) : 입주기업 현황, 특화단지 관리체계 등을 확인
- 지정 해제 여부는 제출된 지정 해제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지정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심의·해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제 후보단지 선정 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제

6. 관련규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7. 기타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02-2183-1622)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Ⅲ.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1. 개요

○ 특화단지의 공동활용시설 고도화, AI 활용 등을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 지역 산업 연계 및 인력양성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단년형 또는 다년형 신청 단지에 공동활용시설*을 구축하거나 공동혁신활동**을 지원

* 공동활용시설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동물류시설, 설계지원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공동혁신활동 :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물류 효율화, 공동 브랜드 마케팅, 시제품 제작, 커리큘럼 개발, 인력 양성 교육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활동

2. 사업예산 및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47.49억원(국비)

○ 지원내용 : 다년형·단년형 신청 단지별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규모
지원	다년형	특화단지 대표 모델화 및 지역연계 과제 지원 (3년)	연간 7.5억원 내외
	단년형	특화단지 단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단년)	연간 3억원 내외

- 공동활용시설 : 국비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40%이며, 잔여 사업비는 지자체·민간이 매칭하고 지자체·민간 매칭 금액 중 현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편의시설 구축의 경우 설계비, 공사비 계상 가능

- 공동혁신활동 : 국비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60%이며, 잔여 사업비는 지자체·민간이 매칭하고 지자체·민간 매칭 금액 중 현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혁신활동 내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 과제주관기관, 참여기관에서 각각 최대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3. 지원대상

○ 산업통상부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

4. 추진체계

○ **지원대상**

- (단년형) 특화단지 조합 및 협의체(과제 주관기관)
- (다년형) 컨소시엄(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구성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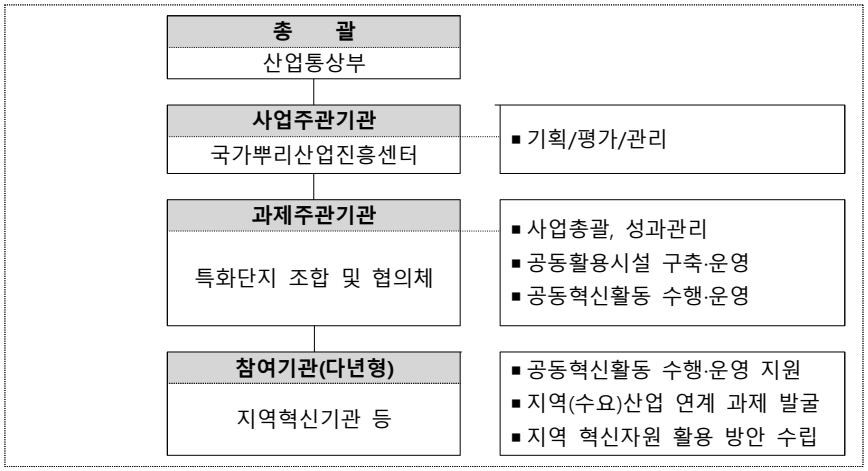

5. 신청방법

○ **(신청주체)** 특화단지 지원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신청

○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지원사업* → 특화단지 → 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작성·제출

○ **(신청기간) 2026. 2. 13(금) ~ 3. 16(월) 18:00**

○ **(작성서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① 단년형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서(Ⅰ) (별첨 6)

② 다년형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서(Ⅱ) (별첨 7)

*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 시, 관리권자인 광역지자체는 단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평가 시 가점 부여('27년 의무제출 예정)

6. 진행일정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3.16) → 평가, 과제 선정, 예산 배분 심의(3~4월) → 협약체결·사업비 지급(5월~)

7.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발표평가, 현장실사 ※ 접수 종료 후 평가 일정·장소 개별 통보

- 발표평가 : 서류심사 통과 단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진행
- 현장실사 :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

○ **(평가기준)**

- 단년형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 공동활용시설 구축·공동혁신활동 지원의 필요성 (10)	20
	- 구축 및 지원 예정 공동활용시설·공동혁신활동의 적절성 (10)	
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60
	-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 (10)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10)	
	-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 사업추진의 투명성 (10)	
	- 지자체의 관리·지원 역할 수행 수준(10)	
기대효과	-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10)	20
	- 지역산업의 발전 (10)	
합계		100

- 다년형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단지 역량	- 사업 수행 조직의 업무 역량 (5)	15
	- 지역산업 적합성 (단지와 지역의 뿌리산업 집적도) (1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체계 (15)	60
	- 공동활용시설 구축 계획의 적절성 (10)	
	- 공동활용시설 투자 재원 계획의 적절성 (10)	
	- 공동활용시설 운영 계획의 적절성 (10)	
	-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 (15)	
사업 추진 여건	- 지자체 의지 (지방비 매칭, 행정 지원 등) (10)	25
	- 정책 부합성 (정부 및 지역산업 계획 등) (5)	
	- 파급효과 (10)	
합계		100

※ 상기 기준에 준하여 다년형 사업의 경우 지속 여부 평가(연차별 지원사업비 매년 재편성)
※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는 해당 단지의 성과점검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지원 지속 여부, 관리 단계 구분 및 지정 유지 여부 검토에 반영될 수 있음

8. 관련규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

9. 기타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02-2183-1622)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별첨 1 뿌리기업의 범위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뿌리산업 범위에 속하거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프레스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積層)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단, 복층절연유리에 한함)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단, 비파괴검사에 한함)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첨 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소속기관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표자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주 소				
	전 화		E-Mail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소속 산업단지명				
	신청단지 면적	㎡	뿌리산업 면적	㎡	
	주요 입주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신청서) 및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210㎜×297㎜(백상지 80g/㎡)

- 20 년도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20 . 00

000 특화단지

< 목 차 >

1. 신청대상 단지 현황 ····· 0

(1) 단지 개요 ····· 0

(2) 기반시설 설치.확충 현황 또는 계획 ····· 0

(3) 주요 입주 및 입주 예정 뿌리기업 현황 ····· 0

2. 뿌리기업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방향 ····· 0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필요성 ····· 0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방향 ····· 0

(3)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0

3.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전략 ····· 0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계획 ····· 0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현황 및 계획 ····· 0

(3) 집적화 또는 협동화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공동혁신활동 수요 및 소요사업비 추계 · 0

(4) 지자체 특화단지 관리방안 ····· 0

4. 기대효과 ····· 0

작성 요령

※ 작성방법(지원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작성자가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변경하여 작성 요망

○ 특화단지 관리권자(뿌리산업 특화단지 실무당당자)

소속기관 (담당부서)	작성자 정보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1. 신청대상 단지 현황 (조성중인 단지일 경우 조성 현황 및 계획)

(1) 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 위치, 면적)

○ (입주기업 수)

○ (유치 업종)

(2) 기반시설 설치·확충 현황 또는 계획

○ (교통)

○ (용수)

○ (전력)

(3) 주요 입주 및 입주예정 뿌리기업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입주형태	입주연도	매출액 (단위:백만원)		
						'19	'20	'21
1								
2								
3								
4								
5								

*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업종 선택

2. 뿌리기업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방향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필요성

* 기업의 집적화·협동화 현황과 이를 강화해야 할 사유 등을 적시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방향

* (예) ①공동 설비투자 ②공동 기술혁신 ③공동 인력양성 ④공동 공정혁신 ⑤공동구매 등

(3)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전략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계획

* 추진계획의 내용을 주체(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시기, 방법과 함께 명시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현황 및 계획

* 집적화, 협동화 추진을 위한 투자, 제도개선,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체계를 적시

(3) 집적화 또는 협동화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 수요 및 소요사업비 추계

○ (집적화·협동화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 수요)

○ (소요 사업비 추계)

내용	소요 사업비

○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

(4) 지자체 특화단지 관리방안

○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특화단지 관리·운영 체계(안), 기업 참여 및 민·관 협력 방식, 성과관리 및 단계별 고도화 방안 등

4. 기대효과

(1)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고도화)

(2) 지역산업 연계 발전

별첨 4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소속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E-Mail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면적	㎡	뿌리산업면적		㎡
	주요 입주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2.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 → 변경·해제 고시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210㎜×297㎜[백상지(80g/㎡)]

별첨 5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 사유서

- 20 년도 -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 사유서

20 . 00

000 특화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 사유서	
단 지 명	
지정연도	
소 재 지	
관리권자 (지자체)	
지정 해제 요청 사유	* 지정 해제를 요청하게 된 주요 사유를 간략히 기재 (예: 지정 요건 미충족, 입주기업 감소, 운영 지속 곤란, 정책 여건 변화 등)
주요 현황	* 뿌리기업 집적 현황 변화, 공동활용시설 운영 여부, 단지 운영 관련 특이사항(해당 시) 등
향후 조치 계획	* 지정 해제 이후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또는 관리 방안(간략 기재)
종합 의견	

20 년 월 일

(광역지자체) _____ (관리기관장명) _____ (인)

직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별첨 6 **(단년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과제명				
특화단지명				
관리권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리지자체/ 담당부서			
	실무담당자		(직위/성명/연락처)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E-Mail	
총괄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실무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202 . . . ~ 202 . . . (00개월)			

사업비 (천원)	구분	현금	현물	계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과제주관기관장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등

- 202 년도 -

(단년형) 00000 사업 계획서

202 . 00

000 특화단지

〈 목 차 〉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 0

2. 지원사업 추진계획 ····· 0

(1) 개요 ····· 0

(2) 사업 도입 필요성 ····· 0

(3) 추진 내용 ····· 0

(4) 운영 및 관리계획 ····· 0

(5) 지자체(관리권자) 특화단지 관리방안 ····· 0

(6) 재원 조달 계획 ····· 0

(7) 기대효과 ····· 0

3. 추진체계 ····· 0

4. 세부 추진 일정 ····· 0

5. 성과 목표 ····· 0

6. 사업비 세부내역 ····· 0

7. 사업 담당자 현황 ····· 0

※ 붙임 :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서,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등

작성 요령

※ 작성방법(지원신청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받음에 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작성자가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변경하여 작성 요망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 (단지명)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연도 및 연혁)

○ (단지 위치, 면적)

○ (유치 업종)

○ (입주 및 입주예정 뿌리기업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입주형태	입주연도	매출액 (단위:백만원)		
						'22	'23	'24
1								
2								
3								
4								
5								

*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 분야 중 업종 선택

2.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개요

○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2) 사업 도입 필요성

* 공동활용시설의 구축이 입주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집적화 · 협동화 촉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 공동혁신활동의 지원이 입주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집적화·협동화 촉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3) 추진내용

* 추진계획의 내용을 주체(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시기, 방법과 함께 명시

(4) 운영·관리계획

* 공동활용시설 구축 후 운영방식, 관리주체, 비용부담, 시설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 공동혁신활동 운영방식, 관리주체,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5) 지자체(관리권자) 특화단지 관리방안

* 관리 기본방향, 지자체 역할 및 책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사전 점검·심의 절차,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

(6) 재원 조달 계획

(7) 기대효과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고도화)

○ 지역산업 연계 발전 방안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작성방법(추진체계 해당사항)

○ 특화단지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지자체, 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도를 포함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도식화하여 제시

○ 참여인력은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인력을 기재

3. 추진체계

(1) 조직도

○

(2) 운영기관(조합 등) 현황

○

기관명		설립일	
주 소			
상근인력 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3) 참여인력 현황

○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담당업무	전공 및 학위				소속 기관	사업 참여율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총괄						
			지원						
			지원						

4. 세부 추진일정

사업 세부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작성방법(성과목표 해당사항)

○ 성과 목표는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구성기준 참여기업에 한함)의 전년도 입주 뿌리기업 수·매출·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관련 산업 성장률을 고려하여 기업 평균 목표치를 작성

○ 기타 특화단지별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목표를 작성

○ 공통지표는 필수 항목으로 작성하고, 자율지표는 업종과 단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5. 성과목표

(1) 정량적 목표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비고
공통 지표		뿌리기업 수			
		매출 증가율			
		신규 고용자 수			
자율 지표	공동 활용 시설	원가절감율			
		설비가동률			
	공동 혁신 활동				

○

(2) 정성적 목표

○

6. 사업비 세부내역

(1)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현금	현물	합계
정부 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민간 부담금			
합 계			

(2)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공동 활용 시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공동 혁신 활동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회계 정산비**				
합 계	천원				

*** 회계정산비는 필수 항목 아래를 참조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상**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미만은 98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18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515천원**
- **총사업비 규모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64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1,84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0억원 이상은 2,043천원**

(3) 예산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주체별(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계획을 함께 명시

7. 사업 담당자 현황

(1)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2) 학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3)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붙임 1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금 및 현물 출연

(단위 : 천원)

항목 \ 사업년도	20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0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 _____ (단체장명) _____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붙임 2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특화단지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금 및 현물 출연

(단위 : 천원)

항목 \ 사업년도	20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0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 _____ (단체장명) _____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붙임 3 입주기업 목록

1 입주기업(특화단지 소재) 목록

(단위 : 생산·영업이익 백만원, 수출 천불, 고용 명, '24년말 기준)

구분	기업명	대표자	기업규모				업종 (주생산품)	뿌리기업 여부 (O, X)	연락처
			생산	영업 이익	수출	고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입주 산업 집적지는 국가(국), 일반(일), 농공(농), 첨단(첨), 자유무역(자), 기타(기)로 구분

※ 뿌리기업의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등을 첨부

2 참여 유관기관(대학·연구소·지식서비스·기타 지원기관) 목록

구분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학·연·서비스·지원기관)	소재지 (시·군·구)	대상지역 (단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붙임 4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

특화단지(공동혁신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협의체명			
대상 산업집적지		운영기관	

위의 특화단지 협의체(혁신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기관) (대표자)

_____ _____ (인) (직인)

_____ _____ (인) (직인)

_____ _____ (인) (직인)

_____ _____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별첨 7 〔다년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과제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특화단지명					
관리권자	관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실무담당자		(직위/성명/연락처)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E-Mail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실무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실무자				
사업기간	총(3년 이내)	20 . . . ~ 20 . . . (00개월)			
	당해연도	20 . . . ~ 20 . . . (00개월)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과제주관기관장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목록, 참여의사 확인서,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등

- 202 년도 -

(다년형) 00000 사업 계획서

202 . 00

000 특화단지

< 목 차 >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 0

2. 사업 추진계획 ····· 0

(1) 개요 ····· 0

(2) 사업 도입 필요성 ····· 0

(3) 추진 내용 ····· 0

(4) 운영 및 관리계획 ····· 0

(5) 지자체(관리권자) 특화단지 관리방안 ····· 0

(6) 재원 조달 계획 ····· 0

(7) 기대효과 ····· 0

3. 추진체계 ····· 0

4. 세부 추진일정 ····· 0

5. 성과목표 ····· 0

6. 사업비 세부내역 ····· 0

7. 사업 담당자 현황 ····· 0

※ 붙임 :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서,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등

작성 요령

※ 작성방법(지원신청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받음에 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작성자가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변경하여 작성 요망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 (단지명)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연도 및 연혁)

○ (단지 위치, 면적)

○ (유치 업종)

○ (입주 및 입주예정 뿌리기업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입주형태	입주연도	매출액 (단위:백만원)		
						'22	'23	'24
1								
2								
3								
4								
5								

*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 분야 중 업종 선택

2. 사업 추진계획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개요

○ (중장기 관점의 전체 사업의 내용)

(2) 사업 도입 필요성

* 동 사업 도입으로 입주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집적화·협동화 촉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3) 추진내용

* 사업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등 뿌리산업의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계획 제시

* 추진계획의 내용을 주체(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시기, 방법과 함께 명시

(4) 운영 및 관리계획

* 공동활용시설 구축 후 운영방식, 관리주체, 비용부담, 시설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 공동혁신활동 운영방식, 관리주체,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5) 지자체(관리권자) 특화단지 관리방안

* 관리 기본방향, 지자체 역할 및 책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사전 점검·심의 절차,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

(6) 재원 조달 계획

(7) 기대효과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고도화) 및 클러스터 촉진효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지역산업 연계 발전 등)

*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방안, 투자 계획 등을 기재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작성방법(추진체계 해당사항)

○ 특화단지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지자체, 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도를 포함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도식화하여 제시

○ 참여인력은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인력을 기재

3. 추진체계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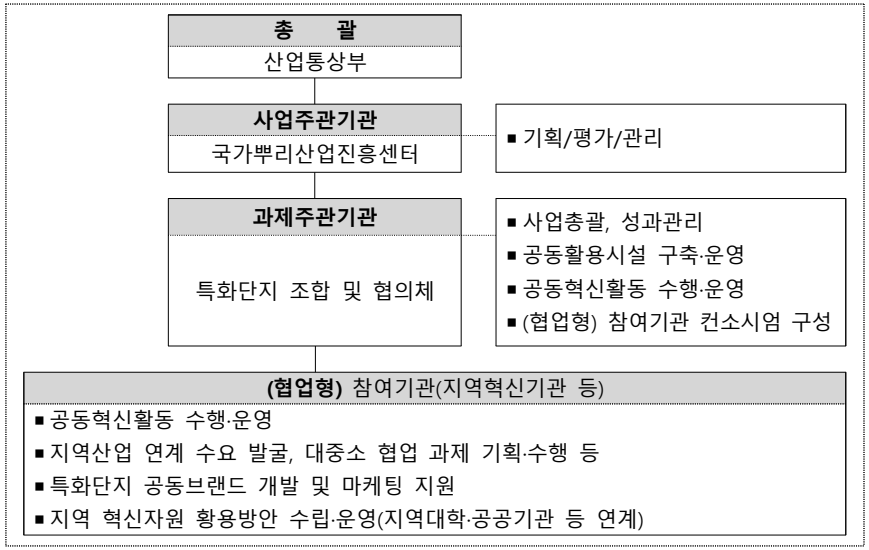

○

* 컨소시엄 전체 조직도 및 업무분장
* 각 조직(기업)별 담당업무 및 담당인력

(2) 운영기관(조합 등) 현황

○

기관명		설립일	
주 소			
상근인력 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3) 기관별 참여인력 현황

○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성별)	담당업무	전공 및 학위				소속 기관	사업 참여율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총괄						
			지원						
			지원						

4. 세부 추진일정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공동 작성)

* 수행기관별 실제 추진되는 일정 기준으로 작성

(1) 1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1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2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2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3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3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작성방법(성과목표 해당사항)

○ 성과 목표는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구성기준 참여기업에 한함)의 전년도 입주 뿌리기업 수·매출·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관련 산업 성장률을 고려하여 기업 평균 목표치를 작성

○ 기타 특화단지별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목표를 작성

○ 공통지표는 필수 항목으로 작성하고, 자율지표는 업종과 단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5. 성과목표(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정량적 목표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 방법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공통 지표		뿌리기업 수					
		매출 증가율					
		신규 고용자 수					
자율 지표	공동 활용 시설	원가절감율					
		설비가동률					
	공동 혁신 활동						

○

(2) 정성적 목표

○

6. 사업비 세부내역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정부 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민간 부담금							
합 계							

(2) 소요명세

* 수행기관별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 1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과제 주관 기관	공동 활용 시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공동 혁신 활동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회계 정산비				
	소 계				천원	
참여 기관	공동 활용 시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공동 혁신 활동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간접비				
	소 계				천원	
합 계					천원	

*** 회계정산비는 필수 항목 아래를 참조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상**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미만은 98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18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515천원**
- **총사업비 규모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64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1,84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0억원 이상은 2,043천원**

○ 2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과제 주관 기관	공동 활용 시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공동 혁신 활동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회계 정산비				
	소 계				천원	
참여 기관	공동 활용 시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공동 혁신 활동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간접비				
	소 계				천원	
합 계					천원	

○ 3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과제 주관 기관	공동 활용 시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공동 혁신 활동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회계 정산비				
	소 계				천원	
참여 기관	공동 활용 시설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공동 혁신 활동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간접비				
	소 계				천원	
합 계					천원	

(3) 예산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주체별(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계획을 함께 명시

7. 사업 담당자 현황

(1) 과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2) 학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3)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5)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6) 학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7)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8)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붙임 1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금 및 현물 출연

(단위 : 천원)

항목 \ 사업년도	20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0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 _____ (단체장명) _____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붙임 2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특화단지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금 및 현물 출연

(단위 : 천원)

항목 \ 사업년도	20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0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붙임 3 입주기업 목록

1 입주기업(특화단지 소재) 목록

(단위 : 생산·영업이익 백만원, 수출 천불, 고용 명, '24년말 기준)

구분	기업명	대표자	기업규모				업종 (주생산품)	뿌리기업 여부 (O, X)	연락처
			생산	영업 이익	수출	고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입주 산업 집적지는 국가(국), 일반(일), 농공(농), 첨단(첨), 자유무역(자), 기타(기)로 구분

※ 뿌리기업의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등을 첨부

2 참여 유관기관(대학・연구소・지식서비스・기타 지원기관) 목록

구분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학·연·서비스·지원기관)	소재지 (시・군・구)	대상지역 (단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붙임 4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

특화단지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협의체명			
대상 산업집적지		운영기관	

위의 특화단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기관) (대표자)

_____ _____ (인) (직인)

_____ _____ (인) (직인)

_____ _____ (인) (직인)

_____ _____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